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 : 형성과정과 분포경향

전 경 수
(서울대, 인류학)

1. 들어가는 말

중남미의 한국이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중남미라는 현지의 사정과 그 사정과 관련된 한국인들에 관한 문제의식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지의 사정을 심도있게 간파하고난 연후에 그 토양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생활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이 그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본고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현지사정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가 의도하고 있는 본고의 주된 내용은 아르헨티나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곳에 정착하는 결과를 생산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루어온 생활의 과정을 시간이라는 선상에서 집적해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현재상태에서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주 거주지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필자가 시도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민사와 한국인들의 주요분포지역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는 것이며, 이 두가지의 소주제들은 상호밀접하게 연관된 상태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어느 곳에 터전을 잡고 산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이유라는 것이 역사적인 문제제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한국인들에 관해서 역사적인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제기해 보려는 필자의 시도가 성공적인 것인가 또는 실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이민의 역사적인 문제제기와 지리적인 분포의 문제를 연관지워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민사”라는 용어를 가능한 한 피하는 데에는 두가지의 이유가 있다. 연구과정이 조직적이지 못하였고, 자료수집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에 수집된 정보라는 것이 만족할만한 자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이라는 주제는 이제 하나의 체계적인 문제로서 제기되는 수준일 뿐이지, 이 주제가 하나의 건강한 연구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리고 일종의 역사를 다루는 필자가 이 문제에 관해서 “史觀”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자가 지향하는 입장은 제한된 시각과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려고 한다.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려는 民俗誌인 태도가 “이민사”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민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민사”라는 용어를 본고에서는 가급적 절제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물론 특정한 용어사용의 절제가 개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의 대상을 “한국인”으로 한정할 점에도 약간의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 “한국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국호를 갖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인식틀 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국호가 통용되기 이전에 이민 또는 그와 유사한 이유로 아르헨티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용어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조상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모두 포함하는 범주를 상징하여 “한국인”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또 다른 한가지의 문제점은 한국이라는 지역과 아르헨티나라는 지역의 상관성이 일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통부분 또는 역사적인 관련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생각한다면, 한국과 아르헨티나와의 관계라는 것은 지극히 생소한 조합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세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이라는 현상에 준하여 두 지역의 관련성을 논한다는 입장 자체가 지극히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가 생소한 주제 속에서 생소한 정보로 구성하는 아르헨티나에 관한 자료는 이민이라는 현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한반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보하고 있는 설명력이라는 차원에서의 장점을 상실한 상태와 비교하여 보면, 아르헨티나라는 생소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조합”일 수밖에 없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이상한 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그 생소한 지역에 대

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바탕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아르헨티나에 관한 자료를 피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아르헨티나의 지역구분과 개략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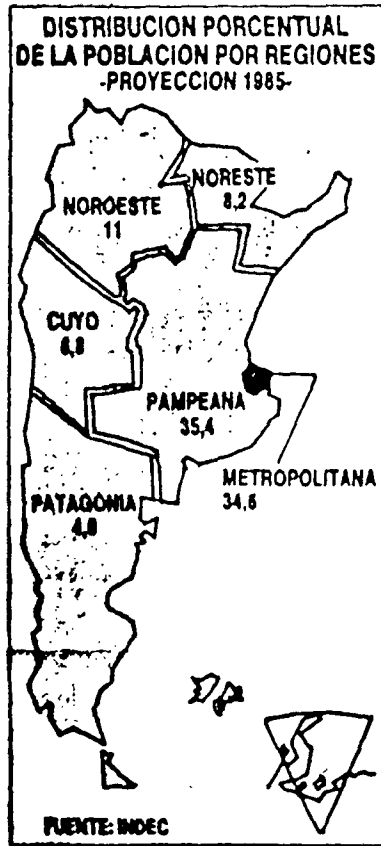
대체로 아르헨티나의 지역은 5개 정도로 구분된다. 이 지역의 특성들을 농업과의 관련성 속에서 구분한 자료들은 기후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분의 자료가 보여주는 특징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산업적인 특성 즉 농업이 주 산업이라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통적인 농업대국으로서의 아르헨티나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전략으로서 농업지대의 구분을 선택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장점으로서 농업국에 이민을 간 한국인들이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반을 얻는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소개가 지극히 부분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앞에서 제시한 장점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1985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총인구는 3,060만명이고, 국토의 총면적은 277만 6,556평방 킬로미터로서 한반도의 13배 정도나 된다. 소수의 원주민을 제외하면 총인구의 약 97%가 유럽계통의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약 절반 정도가 스페인계이고, 다음이 이탈리아계, 소수의 유태계, 그리고 영국인과 독일인들이다. 따라서 이 나라는 전형적인 수민국임과 동시에 과거에는 헌법에도(25조) 명시했던 것처럼 백인중심주의를 표방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 1961년에 아르헨티나는 일본과 이민협정을 맺은 바 있고, 1969년에는 이민촉진법을 성문화하였고, 외국인의 토지구입에도 관용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아르헨티나는 1973년에 불법입국자 35만명을 사면처리한 적도 있음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남미농업이민조사단 1976:26). 아르헨티나의 국립인구조사통계원의 발표에 의하면, 1985년의 3,060만명의 인구가 2천년에는 3,720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공식적 예측이 있다. 1985년의 3,060만명 중 남자인구는 49%이고 여자인구는 51%로서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보다 약 61만명이 더 많다고 한다. 인구의 지역별분포상황을 보면, 까뻬탈(수도)과 그란 부에노스아이레스(일명 METROPOLITANA)에 총인구의 34.6%, 팜파(PAMPEANA) 지역에 35.4%, 꾸요(CUYO, 이 지역의 중요도시들은 멘도사, 산후안, 산루이스 등이다)에 6.8%, 동북지역(NORESTE, 이 지역의 중요지역 명칭들로는 꼬리엔페스, 차꼬, 포르모사,

미시오네스 등이 있다)에 8.2%, 서북지역(NOROESTE)에 11.0%, 그리고 빠따고니아(PATAGONIA) 지역에 4.0%로 분포되어 있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지리적으로는 팜파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팜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총량은 아르헨티나 전체인구의 70.0%에 달한다.

인구의 분포가 이 나라의 산업적인 특성 즉 농업국으로서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아르헨티나의 지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된다. 메트로폴리탄을 포함하는 팜파지역은 중부대평원으로서 토지의 비옥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전국토의 5분의 1, 전국 농경지의 3분의 1, 곡류재배농지의 77%, 개량초지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산타페 주, 표르도바 주의 남부, 엔페리오 주의 남부를 포함하고 있다. 빠따고니아 지역은 남부대평원으로서 리오네그로 주, 네우젠 주, 추부트 주, 산타크루스 주가 포함되고, 강우량이 적고 온도와 습도의 교차가 가장 심한 곳으로서 온대과수의 한계지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 방목지로 이용되어 온 건조한 반사막지대이었으나, 최근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으로서 서쪽의 안데스 산맥에서 연원되는 수원을 이용해서 농업과 공업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관개농업과 목축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이곳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동으로 농업개발사업(IDEVI)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산물로는 사과와 토마토가 있고, 배, 포도, 복숭아, 꿀 등의 생산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동북지역은 농업적인 특성상 두 지역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지역은 동북부의 미시오네스 주, 표리엔페 주, 엔뜨레 리오 주의 북부를 포함하는 곳으로서 팜파지역에 버금가는 농목지역이다. 팜파지역보다는 더운 곳으로서, 강우량이 많고 수량이 풍부한 파라나 강과 우루과이 강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차쵸(CHACO)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중북부 일부를 차지하는 곳으로서 파라과이와 브라질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아르헨티나가 점유하고 있는 차쵸지역은 차쵸 주, 산타페 주의 북부, 포르모사 주로 이어지는 고온건조한 곳으로서 이러한 기후대에 알맞는 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북지역(NOROESTE)은 고온건조한 반사막지대로서 살타 주, 후후이 주, 표르도바 주의 북부로 이어지는 곳이다. 꾸요지역은 흔히 안데스지역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서 멘도사를 중심도시로 하는 산간지방으로서 관개면적이 많은 곳이며, 포도의 생산이 많은 곳이다(이상의 지역설명을 위해서는 배대한 1985:8-9와 아르헨티나의 정부자료를 많이 참조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지도를 참조하라).



〈지도〉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인구분포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분포에 관한 설명을 전기한 인구의 분포와 중복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인구구조가 농업적인 기반과 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최적인 중부평원의 팜파(PAMPEANA)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 특히 서북, 주요, 빠따고니아 등의 지역에는 인구밀도가 지극히 낮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수민정책 중에서 이민이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 반경 100km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이러한 점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 이민이 성공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라마르게 농장의 위치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방으로 약 1,100km 떨어진 리오네그로 주 즉 빠따고니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상기의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형적인 수민국으로서 유럽으로부터 온 외국인의 국적소유자가 많

은 곳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의 영주자들 중에는 외국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적취득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1914년에는 총인구의 30%가 외국인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숫자는 계속 떨어져서 1980년에는 7% 즉 2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이탈리아, 스페인, 파라과이, 칠레 등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불법체류자들은 아니다.

이상의 정황을 참작해 볼 때, 수민국으로서의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주산업인 농업의 육성 및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을 당분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아르헨티나로의 이민이라는 것은 농업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이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 100km 반경내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인구과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개발사업(IDEVI)과 빠따고니아 개발촉진법이 최근에 발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르헨티나의 수민정책은 인구과소지역을 겨냥한 농업 및 경제개발사업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점은 쉽사리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정부가 제안해 두고 있는 인구정책을 감안해 볼 때, 2천년 이후 아르헨티나가 지향할 이민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라는 것은 남미의 전통적인 수민국들, 예를 들면 브라질과 파라과이 등과 같은 국가들이 지극히 제한적인 수민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과도 연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3. 移民前史

한국인이 아르헨티나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과 이민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필자는 아르헨티나로 이민한 한국인들의 지위를 여권상의 국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즉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한국 이민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정부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의 사전 또는 사후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된 경우라는 조작적인 정의 위에서 이민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적인 정의를 벗어난 경우의 한국인 또는 그 조상들의 이동에 관해서는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위와 같은 조작적인 이민의 정의가 적용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한국인의 아르헨티나 출현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前史”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만약에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이민이라는 차원에서만 한국인의 해외이동을 취급하게 되면,

이민이라는 개념자체의 협소성에 의해서 한국인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현상을 융통성있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한반도에서 있었던 최근세 및 현대사의 복잡성 때문에, 한국정부의 무관심 또는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이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이동현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민이라는 현상을 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 다른 지역 또는 국가와의 비교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범주의 적용이 유리한 접근전략이라고 생각한다.

1) 유카탄으로부터의 流民

우리는 1905년 봄에 계약노동이라는 조건으로 멕시코의 유카탄에 있는 에네켄 아시엔다로 송출되었던 1,031명(최초의 출발시는 1,033명이었으나 항해도중에 2명이 사망하였음)의 한국인과 가족들에 관한 기록을 알고 있다. 그들은 1898년 美西전쟁 이후 미국이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이양받고 대규모로 개발하였던 마닐라섬의 등장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에 임금노동자로 송출되었던 것이다. 에네켄 농장의 쇠퇴로 인하여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한국인들은 살길이 막연하여 유랑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며, 그중에서는 1921년에 약 200명의 한국인이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에 집단이주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파나마를 거쳐서 남미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필자는 이 전언을 주목하고, 필자가 1979년 예일대학의 국제회관(International House)에서 만난 적이 있는 파나마 출신의 한국계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부인의 증언을 회상한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가 한국인이었다고 진술했고, 자신은 파나마 태생이라고 하였다. 그녀의 모습은 거의 한국인이거나 다름없으며, 그녀의 남편은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 시에 있는 대학의 스페인 문학교수로서 여름동안에 예일대학에서 가족과 함께 연구중에 있었다. 이 사실이 미약하나마 멕시코의 유카탄으로부터 남미로 유랑하는 한국인들에 관한 하나의 단서가 된다. 그리고 필자가 1986년 11월 페루의 리마에서 교민의 안내로 만난 50대의 남자가 자신의 혈통이 한국계임을 주장하였고, 그의 성은 金이라고 하였다. 그는 길가의 모퉁이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가게(despensa)에서 사탕과 낱개의 담배 등을 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상이 어떠한 경로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피레아노”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필자는 멕시코의 유카탄으로부터 유랑하였던 한국인이라는 심증을 적용하려고 한다. 세번째의 유랑 사례는 아르헨티나의 북부지방, 흔히 서북지방(NOROESTE)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출몰하는 “피레아노”에 관한 정보들이다. 필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는 여러 명의 교포들로부터 이들에 관한 정보를 듣고,

1987년 2월에 이곳을 방문하였다. 이 지역에는 후후이, 뚜꾸만, 살타 등의 비교적 작은 도시들이 있고, 이 도시들에는 최근에 이민을 간 한국인들이 두서너 가구씩의 류소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필자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후후이(Jujuy)에 거주하는 백홍주 씨와 최천명 씨로부터도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은 “인디오들처럼 생긴 사람들은 꼬레아노”임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그 “꼬레아노”들은 가끔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후후이를 방문하고, “COREA”라는 옷가게의 간판이 붙은 한국인의 가게를 찾아온다고 하였다. 2박 3일 동안 필자는 그들을 찾아서 후후이의 일대를 헤매었지만, 필자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아르헨티나의 서북지역을 여행하면서 “꼬레아노”를 만났다는 한국이민의 진술과 후후이에서 의류소매상을 하는 한국이민들의 진술을 기초로, 필자는 아르헨티나의 서북지방에 살고 있는 소수의 한국인 혈통임을 주장하는 “꼬레아노”들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한다. 물론 후일 이들에 대한 현지답사가 이루어진 뒤에 이 문제는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 필자는 앞의 파나마와 페루의 사례들처럼 멕시코 유카탄으로부터의 한국인 유랑민의 범주를 적용하고자 한다. 파나마나 페루의 사례들보다는 더욱 흥미를 끄는 점은 이들의 존재형태가 일종의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심증이 강하다.

멕시코의 유카탄으로부터 남미로 흘러들어온 한국인 유랑민이 어떠한 경로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일종의 추리소설의 구성형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자의 형편이다.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들의 유랑경로에 대해서 추리를 해야 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게 된다. 이들의 유랑경로에 대해서 필자는 아래와 같은 추리를 하고자 한다. 유카탄의 에네켄 농장이 쇠퇴하고, 멕시코의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고,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군의 한국인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파나마를 경유하여 남미 땅에 들어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간 곳은 그들의 노동력을 손쉽게 팔 수 있는 곳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남미에서 노동력을 무제한적으로 요구하던 곳은 브라질의 대농장들과 페루와 칠레 그리고 볼리비아의 광산들이었던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들이 브라질로 향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랑길이 브라질을 향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의 라파스와 산타크루스를 경유하는 육로를 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존의 밀림 지대를 통과한 후 브라질의 대서양연안에 당도해야 하는 어려운 통로이다. 페루에서의 한국인 흔적은 남미로 들어선 한국인 유랑민들이 태평양 연안을 타고 이동하

였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안테스를 넘어서 동쪽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남미로 들어온 유랑 한국인들의 일부는 볼리비아의 광산지대에 노동자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마도 그들이 볼리비아의 광산지대에 정착한 것은 1930년대 초반 이전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32년부터 1935년까지의 차코전쟁(볼리비아와 파라과이간의 전쟁으로서 1935년에 휴전이 되고, 1938년에 종전을 맞는다) 당시에 전화를 피해서 볼리비아와의 국경지대인 아르헨티나의 서북부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즉 아르헨티나에 가장 먼저 축적을 남긴 한국인들은 1932년과 1935년 사이에 볼리비아를 경유하여 들어온 멕시코의 유카탄 출신이라는 감정적인 결론이 가능하다. 이에 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서북부에 대한 정밀한 현지답사의 결과에 의해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유랑민들의 후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가끔 발견되는 도시들은 후후이, 뚜꾸만, 살타 등지이다.

2) 일본이민에 속한 경우

한반도의 운명이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를 경험했던 것이 이민사에도 반영된 것으로서, 한국인이 일본인들의 이민대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다.

현재, 이 범주에 들어가는 개인으로서 밝혀진 사람은 두 사람이다. 첫째의 경우는, 1940년 이전에 아르헨티나에 들어온 한국여자로서 그녀는 통계상 일본이민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왜정시 중국의 상해에 거주하다가 이탈리아인과 결혼을 하여 이탈리아로 갔다가, 가족이 아르헨티나로 1940년 이전에 이민한 경우이다. 그 가족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궤메스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두번째의 경우는, 1941년 일본어선의 주방종업원으로서 아르헨티나에 하선한 李次孫(일본명은 小林)씨이다(일본인의 양자로 입적하여 아르헨티나에 들어왔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8 : 78). 그는 1964년에 한국으로부터 부인인 손경자씨를 데리고 왔으며, 1980년에 작고하였다.

3) 반공청년의 경우

1957년 5월, 12명의 “반공청년”들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로서 포로교환시에 제 3국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에 따라서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도군과 함께 배를 타고 인도에 갔다가, 브라질에 가는 55명의 반공청년들

과 함께 남미행을 결심했던 사람들이다. 브라질행을 한 반공청년들은 1956년 2월 8일 리오데자네이로에 도착하였으나, 아르헨티나로 온 반공청년들은 1957년 5월에 에세이사 공항에 도착하였다. 12명 중에는 중공군 2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 한국인은 10명이었다. 그들 중에는, 사진사를 하는 김관옥, 어선의 선장을 하는 정주원, 약방을 경영하고 있는 임익관(1931년 평남 순천 태생, 김일성대학 수학 중 인민군 포병소위로 참전중 유엔군에 귀순, 라프랑코 제약회사 근무), 서울공대 출신의 박상진, 일본여인과 결혼하여 세탁소를 하고 있는 송재호, 카메라상을 하는 조철희, 홍일섭, 그리고 마르델 플라타에 거주하는 1명, 정신질환자로서 피에라델 푸에고의 우수와야에 사는 문명근 씨의 농장에 기식하고 있는 1명, 도합 9명의 존재가 현재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행방을 모르고 있다. 김관옥씨는 후일 한국으로부터 이민이 도착한 이후에 그들의 정착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도우는데 앞장서 서기도 했고,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로부터 월경해서 불법체류를 하는 한국인들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의 위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한 바 있다. 1986년 2월 8일, 김관옥, 정주원, 임익관 등은 브라질의 쌍빠울로에서 거행되었던 “反共青年 着伯 三十週年 紀念式”에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다.

김관옥씨는 1929년 8월 5일 평양의 신창리 태생으로서 법경전문학교 야간부 3학년에서 중퇴한 후, 1950년 7월 30일 북조선 인민군에 입대하여 낙동강 전투에 투입되었다. 1950년 10월 충북 보은에서 국군에 의하여 포로가 된 후,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그는 1953년 휴전후 중립국을 선택하여 인도에 간 것이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그는 1967년 1월에는 초대 교민회장에 피선되었다. 그리고 그는 아르헨티나 여인과의 초혼을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은 바 있고, 그후 이차손씨가 1980년에 사망한 후, 이씨의 미망인인 손경자씨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다.

반공청년이 아르헨티나에 들어간 1957년까지의 한국이민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유카탄으로부터 유랑을 한 한국인들과 일본이민의 대열에 끼었던 사람들 그리고 반공청년들은 “한국이민”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묶을 수 있을 만한 결속 또는 유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다만, 반공청년으로 간 김관옥씨가 일본이민의 대열에 끼어간 이차손씨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을 제외하면,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한국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아르헨티나의 주류사회에 묻혀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존재가 알려지고 그들과의 사회학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1960년대에 아르헨티나로 들어간 한국이민들이다. 유카탄으로부터 유랑해 온 한국

인들의 후손에 대한 확인과 인식도, 일본이민으로 들어갔던 이차손씨의 존재에 대한 확인도, 그리고 반공청년들의 존재와 후일에 결성되는 한국인 교포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의 제 1대 회장을 반공청년 출신인 김관옥씨가 맡았던 것도, 모두 나중에 도착한 한국이민들의 출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결국, 하나의 사회로서 구성이 가능한 이민사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형성되어야 하고,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사회라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볼 때, 그 “어느 정도의 규모”와 그 규모의 형성시기라는 것은 1960년대의 한국 이민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사에서 일괄적으로 다루었던 몇가지의 범주들에 해당하는 이민들을 편의상 ‘이민선배’라고 하고, 앞으로 다룰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이민들을 ‘이민후배’라고 할 때, 이민선배들은 이민후배의 등장에 의해서 그들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후배들은 이민선배들을 한국문화 속의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적용되는 선배로서 대접하는, 문화연속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도 파악되고 있다.

4. 정책이민의 전개과정

국가간의 이민이라는 현상은 수민국이 있고, 그의 상대인 이민의 송출국이 있어야 한다. 수민국과 송출국은 각각의 이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민을 위한 양국간의 법적 근거로서 이민협정을 맺음으로써 이민이라는 것이 현실화되는 근거가 된다. 한국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이주를 허가하는 법령을 1962년에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1960년대 초반부터 남미로의 이주가 진행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정통적인 수민국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농업이민을 받아왔기 때문에, 남미로의 한국이민은 대체로 “농업이민”이라는 용어 속에서 이해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정식 이민협정이 없었던 관계로 인하여, 초기에 행해졌던 이민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양국간의 협정에 기초한 정부차원의 이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기초하여 추진되었던 해외이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1984년에 양국간의 이민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바람직한 해결을 본 셈이긴 하지만, 이민협정 이전의 이민이라는 것은 법적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여러가지의 형태로 나타났었고,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정부는 관리를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한 적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를 사용하여 투자를 시도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이러한 시도들이 모두 이민협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한 착안점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민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국인 아르헨티나의 정부와 공식적으로 논의를 할 수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할 방편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협정이 없이 자국의 해외이주법에만 근거하여 국민을 해외로 송출한 경우에 발생한 많은 수의 불법이민에 대한 문제점과 그들에 의해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은 완전하게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는 점도 반성의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수민국인 아르헨티나의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의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파라과이로 이주한 한국인이 아르헨티나로 월경해서 들어온 경우는 외교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며, 그러한 범주의 한국인들은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면령을 내려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구제를 받은 적도 있다.

아르헨티나의 입국을 위한 한국여권과 비자발급을 근거로 하여 아르헨티나에 입국한 최초의 한국인들은 1965년 10월 14일의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아르헨티나에는 법적인 절차와는 상관없이 밀입국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즉 1964년 말에서부터 1965년 초에 아르헨티나로 밀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로 이민을 허가받았던 사람들이었다. 당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로의 초청장 이민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파라과이나 볼리비아로 가던 사람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중하차하기도 하였고(1965년 4월부터는 거의 한달 간격으로 파라과이 행의 한국이민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페드로 부두에 정박하였다. 파라과이의 아순손을 향하는 배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끼고 흐르는 라플라타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파라과이나 볼리비아로부터 월경하여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경우도 많았다(1985년도 외무부가 발행한 “재외국민현황”을 보면, 1965년 당시 아르헨티나의 교민수는 169명이고, 파라과이의 교민수는 1,223명, 볼리비아의 교민수는 282명인 것을 참조할 것). 이들의 정착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후일 “百九村”으로 알려진 난민구호촌이다. 이 백구촌이, 후일 법적인 근거를 갖고 농업이민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한국이민들이 살아가고 모이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점은 이민사회의 특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르헨티나에 가장 먼저 정착한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불법이민이었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1965년 10월 14일 일차농업이민 선발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들은 약 100세대에 이르고 있었다(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8:78).

1) 농업이민의 시작

(1) 라마르게 농장

1962년 해외이주법의 발효로 인하여 해외로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또는 사적인 조직도 만들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이민을 가려는 나라에 연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려고 계획을 하였던 사람들은 서울의 영등포에 있던 “도림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1963년부터 희망자도 결집하고 아르헨티나의 카운터 파트도 물색하고 있었다. 이때는 이미 브라질로의 이민이 출발하였던 때였기 때문에, 남미로의 이민은 일종의 붐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아르헨티나로의 이민추진 세력들은 어렵지 않게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의 카운터 파트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홍종철씨가 수년전부터 아르헨티나의 기독교 봉사회를 통하여 한국이민을 받아들일 것을 추진한 바 있다(국제경제연구원 1977:11).

그리고 홍종철씨는 한국측의 이민추진 세력을 방문하여 함께 이민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것 같다. 당시 브라질과 파라과이 등지에서 있었던 이민사업의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홍씨는 아르헨티나의 변호사와 결탁하여 이민사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배제할 수 없다. 김관옥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일차이민이 들어오기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 있던 다른 한국인들과는 달리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혼자서 생활을 하던 홍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뜨내기로 보였으며, 그의 가족은 일차이민에 포함되어 있었다. 어쩌든 이민추진 세력에는 朴民興, 洪宗哲, 李永浩 등이 있었고, 이들이 아르헨티나의 어떤 기관 또는 개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리오네그로(RIO NEGRO) 주정부로부터 약 400ha의 땅에 농업이민을 정착시키는 계획을 허가받았다. 이곳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 약 1,10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며, 초엘레초엘(CHOELE CHOEL)시에 가까운 라마르게(LA MARQUE)읍에 위치한 곳이다.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추진세력들은 1964년 10월에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최종적인 허가를 받았고, 1965년 6월에는 홍콩에 주재하는 아르헨티나 영사가 방한하여 이민을 희망하는 32가주 147명에게 입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수속을 끝내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르헨티나에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민비자는 이영호씨가 홍콩의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가서 받아오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리고 일차이

민의 선발대로서 13세대가 1965년 8월 17일 오후 5시 30분 부산항을 떠났다. 오끼나와에는 8월 18일 오전 9시에 입항하여 동일 오후 11시에 출항하였다. 홍콩에는 8월 21일 오후 5시에 입항하여 동일 24일 오전 11시에 출항하였다. 싱가포르에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입항하여 9월 2일 오후 5시에 출항하였다. 셋팅함에는 9월 3일 오전 7시에 입항하여 동일 오후 6시에 출항하였다. 페낭에는 9월 5일 오전 8시 30분에 입항하여 9월 6일 오후 2시에 출항하였다. 모리셔스에는 9월 14일 오후 6시에 입항하여 9월 15일 오후 2시에 출항하였다. 마르케스 로렌소에는 9월 19일 오전 7시에 입항하여 9월 22일 오전 7시에 출항하였다. 터반에는 9월 23일 오전 7시에 입항하여 9월 24일 오후 2시에 출항하였다. 이스트 런던에는 9월 25일 오전 9시에 입항하여 동일 오후 3시에 출항하였다. 에리자베스에는 9월 26일 오전 8시 30분에 입항하여 동일 오후 6시 30분에 출항하였다. 케프타운에는 9월 27일 오후 9시에 입항하여 9월 29일 오후 9시에 출항하였다. 리오테자네이로에는 10월 8일 오전 9시에 입항하여 10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출항하였다. 산토스에는 10월 11일 오전 9시에 입항하여 동일 오후 11시 30분에 출항하였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10월 14일 오후 9시에 입항하였다. 이때의 동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세영, 황준영(카나다로 이주), 김재선, 노득린, 김홍남(재미), 조철희(엄부자 남편, 재미), 박남극, 박혜신(홍중철 모친, 재미), 최신평, 홍중철(재미), 정낙구(재미), 방호찬(재미), 최광혁(재미), 이영호(재미), 엄영철(재미), 김영철(재미), 장인보(재미), 김치영(한국으로 귀국하고 가족은 스페인으로) 등이다. 그리고 그들이 승선했던 배는 화란 국적의 보이세바인호였다.

그리고 그들은 10월 19일까지 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민들이 바로 하선을 하지 못했던 것은 홍씨가 제대로 수속을 밟아놓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이민들이 부두로부터 목적지인 라마르께 농장에 이르는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일차이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19일날 배에서 쫓기다시피 하선을 하는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그 때, 일차이민 중의 한 사람인 노득린씨가 14일의 출여행사시에 얼굴을 익혔던 김관옥씨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김씨는 이민들을 그날 저녁에 또리노 호텔로 안내하였다고 한다.

일차이민으로서 선발대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곧이어서 다른 이민선을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갔으며, 선발대를 포함하여 일차로 떠났던 사람들은 모두 25세대였고, 나머지 7세대는 누락되었다. 그들이 한꺼번에 떠나지 못하고 나뉘어서 출발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예를 들면, 이민추진의 주체 세력이었던 박민홍씨가 출발직전에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는 불상사가 벌

어졌던 것도 이러한 이유가 되는 것 같다.

당시 이민을 추진하였던 몇 사람의 생존자들에 관한 인적사항과 그들의 세부적인 추진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황준영씨는 1919년 3월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태생으로서 1936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와 북경 등지에서 운전과 상업을 하였던 적이 있다. 그는 해방후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946년 9월에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그후 서울과 부산의 시장에서 악세사리를 생산하고 판매하였으며, 악세사리 생산판 매조합을 창설하고 그 조합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일차이민으로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후 1965년 11월부터 1967년 6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라마르게 농장에서 일을 하였고, 그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 백구촌에 살면서 악세사리 생산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그는 1979년에 캐나다로 재이민하였다. 황씨는 박민홍씨와 홍중철씨의 권유로 이민단에 가입한 경우로서, 일차이민 당시에 그는 악세사리 생산기구 일습을 이민집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악세사리 생산에 필요한 건본을 상당량 사모아서 갔다. 그리고 그는 라마르게 농장을 일찌기 탈퇴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악세사리 생산을 하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국이민 사회에서는 악세사리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러한 덕분에 그는 “황부로찌”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박민홍씨가 서울에서 이민을 추진한 기간은 약 2년간이나 된다. 그리고 황씨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민단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초빙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예를 들면, 단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사 한 분(이영호), 축산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구 계명대학 축산과 교수 한 분(김도엽), 양계를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당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독농가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양계전문가 한 분(김용남), 그리고 이민생활의 고된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줄 수 있는 고아원 설립자 한 분(장덕수) 등을 영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민단내에는 농한기를 대비해서 조화부, 자개공예부, 나무인형공예부, 돛자리공예부 등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즉 이들은 농업을 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서는 전혀 무식한 상태에서 이민단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후 홍중철씨의 안내로 라마르게 농장에 들어간 직후 모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퇴거해 버리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 홍씨는 미국으로 재이주해버림으로써 농업이민은 시작부터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홍씨 등의 주체세력이 리오네그로 주정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땅은 미개간지로서 그들이 한국을 출발할 때 가지고 갔던 호미와 삽 등으로는 전혀 개간을 할 수가 없었고, 그곳은 연평균 강우량이 200mm 정도로서 관개시설이 없으면 농사가 불

가능한 곳이라는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일차이민은 모두 라마르께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철수하였고, 이즈음에 파라과이로 가던 이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8세대가 라마르께로 갔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5세대(은준기, 김광지, 백기봉, 김용준, 성명미상)는 더이상 움직일 차비도 없고, 라마르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아르헨티나의 라마르께 농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실정을 한국정부에 호소해 왔고, 해외개발공사가 조사에 착수한 후 1967년 11월에 농장개발을 결심함과 동시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해외개발공사의 아르헨티나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초대 지사장에는 이상순씨가 임명되었으며, 지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KODCO 농업 협동조합”이라는 법인단체를 등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농장개간과 주택건설을 위해서 한국정부의 용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해외개발공사는 이 조합에 현지의 4세대를 흡수하고, 한국에서 10세대를 더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공모된 9세대가 1969년에 라마르께 농장에 도착하였다. 9세대 중에는 농사를 전혀 모르는 고급장교 출신(육군대령 또는 중령 등)들이 끼어있기도 하였다. 해외개발공사의 농업이민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장교출신의 가족들은 라마르께 농장에서 곧 이탈될 수밖에 없었다. 해외개발공사의 농업이민 정착을 위한 기본구도는 집단농장의 경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구도가 시발점에서부터 환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해외개발공사의 농업이민 선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민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계획과 실행을 시도하였던 것이지 집단이라는 개념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쉽사리 간과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라마르께 농장에는 파라과이로 가던 사람들이 도중하차한 경우(5세대 중에서 4세대)와 서울에서 해외개발공사의 모집에 의해서 간 세대(9세대 중 3세대, 3세대의 성명은 이재흠, 조완현, 최승준이며, 이재흠은 군출신인 선친을 승계하였고, 미국으로 재이주한 최승준의 뒤편 김관옥이 승계)가 합하여 모두 7세대로 하나의 농장을 구성하게 되었다.

라마르께 농장은 농업이민을 추진하였던 개인들이 “저지른” 일을 후일 해외개발공사가 정부차원의 이민정책 추진이라는 명분하에 개입하여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착된 한국인 농장으로 살아남게 된 것이다. 그 뒷수습의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 한편 한국정부에서는 1965년에 석정선씨를 중심으로 하여 해외개발공사를 창설하였고, 석씨의 보좌관을 역임했던 백대현씨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해외개발공사는 아르헨티나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장으로 하여금 라마르게 농장의 건설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개공의 지사는 1967년 6월에 리오네 그로 주정부로부터 라마르게 농장의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개간권을 획득하였고 1974년 12월에 정식으로 구입(토지구입대금은 당시 미화 3,812불)하였다. 그리고 사과농장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개인들에게 3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었다. 그러나 사과라는 것은 처음 식수한 지 8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농장입주자들은 융자받은 금액을 사과의 생산으로 갚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농장입주자들은 융자액으로 사과나무만을 심어놓고, 생계는 토마토의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토마토의 생산으로 번 돈은 생계를 꾸려야 했기 때문에, 농장입주자들은 사과농장의 재투자를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해개공의 융자액을 상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 농장건설을 위한 융자의 방식이 단기융자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했던 라마르게 농장 때문에, 융자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지사장들이 적지않은 문책을 당하기도 하였다. 1982년 12월 현재의 융자총액은 미화 156,038불이었다. 그후 융자금 전액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토지의 개인불하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구입 당시 코드코 농업협동조합의 명의로 있었던 소유권은 융자금 상환후 개인불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르헨티나의 관례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연고권을 가진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압력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해외개발공사에서는 미환수의 융자액을 결손처리하고, 1985년에 라마르게 농장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들에게 넘겨주었다. 라마르게 농장이 가장 성공한 농업이민의 사례로서 손꼽히는 것은 농장을 지키고 있었던 개인들의 노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해외개발공사의 집념과 투자노력 그리고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사후 마무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라마르게 농장의 성공사례가 이후 아르헨티나의 각지에서 한국인들이 건설하는 농업이민촌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약에 해외개발공사가 라마르게 농장에 제공하였던 융자액을 무리하게 환수조치의 시도를 하였더라면, 라마르게 농장의 입주자들도 피해를 보았을 것은 분명하고, 농업이민 송출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한 해외개발공사의 존재의의조차도 상실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융자금의 역지환수는 분명하게 입주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해외개발공사와 한국정부에 대해서 반감과 저주의 욕설을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누워서 침뱉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라마르게의 경험은 후일 해외개발공사의 사업개발과 추진에도 많은 교훈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선택이 되어서 그 이후에 더 많은 농업이민의 송출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해석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복잡한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공헌을 한 분은 1974년 11월부터 1986년 5월까지 해외개발공사의 아르헨티나지사장을 역임하였던 李成根씨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라마르게 농장에는 7세대가 180ha의 땅에 사과와 채소의 재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1984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조직된 “한아새마을농업센타”에서 파견한 제 1 차 양봉 복합영농선발단의 일부인 4세대가 라마르게에 합류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이다.

(2) 루한 농장

루한(Lujan) 농장의 경우는 칠레에 가기로 계획되었던 화훼재배이민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마련된 것이다. 주 칠레 윤주영 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해외개발공사는 칠레의 산티아고 근교에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이민을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공모한 후 출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칠레에 좌익정부인 아옌데 정권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칠레에 구입계약을 해 두었던 토지를 포기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74km 지점에 있는 루한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였으며, 1971년 3월에 동 농장의 토지 11ha를 미화 18,888달러로 구입하였다. 조합형태로 농업이민을 입식시키기 위해서 10명의 조합원이 서울에서 이미 구성되었고, 선발대로 산티아고에 도착했던 金炳曹은 정부의 계획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칠레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조합의 간부들(목사와 장로 등)은 현지로 가던 도중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주저앉아 버렸고, 결국 현지에는 1972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3세대가 입주하게 되었다. 그후 1세대는 귀국, 1세대는 리오네그로 주로 이사, 1세대만이 양계(약 1,500수)로 어려운 생활을 시작하였다(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8:79; 전게서의 숫자상 오차에 대해서는 해외개발공사의 출장보고서를 참조하여 수정하였음). 그동안 이 농장에는 7세대가 입주를 하여 영농시도를 하였으나, 농장규모의 협소와 영농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1981년 1월에는 농장원 전원이 이탈하고 휴농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해외개발공사는 이러한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1982년 1월 이후 루한 농장의 매각방침을 세웠다. 그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악화되었고,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 이후 폐소貨의 평가절하와 지가하락으로 인하여 토지매각도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교포인 김형일씨가 해개발공사에게 구입대상자를 추천한 적도 있다(보건사회부 사회국 해외이주과 1982년 12월, 남미 3개국 출장보고서).

그후 한국에서 襄大漢 박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KASAC(Korean Argentina Sae-

maul Agricultural Center) 즉 “한아새마을농업센터”의 계획에 따라서 1984년 10월에 제 1차 양봉복합영농선발단의 일부가 루한 농장에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배대한 1985). 이 사업은 한국양봉협회와 해외개발공사의 공동협조가 뒷받침이 되고 있음도 지적된다.

(3) 산 로렌소 농장

이 농장은 1969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간 김병도씨가 개인적으로 1972년에 시작한 곳으로서, 산 로렌소 농장은 리오네그로 주 헤네랄 피네사 지역에 있는 100ha의 황무지를 구입하여 자력으로 개간하고 과수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 이 농장의 입식시기는 1973년 11월이었고, 최초로 입주한 호수는 11세대였다. 그 중에서 2명은 해외개발공사가 주선하였고,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출신의 김현대씨 부부가 채소재배의 기술을 이용하여 토마토와 호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남미농업이민조사단 1976:28 & 194). 김병도씨는 1982년 9월 동지역에 20ha의 과수농지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총 120ha의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4) 얏다마우카 농장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북방 986km에 위치한 동 농장은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 주에 속한 곳으로 면적이 20,894ha이며, 1978년 외무부 주관으로 동 농장을 구입하여(미화 2,115,000불) 새마을 시범농장을 건설함으로써 대남미지역에 대한 농업이민을 확대추진하려는 계획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를 구입한 후, 1979년 10월 외무부 합동조사반에 의하여 영농부적지로 판정받은 후 농장개발이 전면 중단된 곳이다. 그리고 동 농장은 1980년에 외무부에서 보사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해외개발공사 지사에서 이를 인수하였다. 해개공사에서는 한국 농업이민을 추진하지도 못한 채, 현지에서 아르헨티나인 2명을 현지관리인으로 고용해서 관리중에 있었다. 1982년 10월 현재 총투자액은 미화 3,349,000불로 계산되었다. 1982년 1월 이후 동 농장에 대한 3개의 관리대책 방안(환지, 국내진출 기업체에 대여, 매각조치)를 추진중에 있으나,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전쟁 이후 정치적 경제적 불안으로 인하여 세가지의 대책방안이 모두 추진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1978년 8월 동 농장구입 이후, 농장개발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고손실만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년간 관리비로서 부동산세 4,500불, 수세 2,340불, 농장관리인건비 2명 6,341불, 기타 경비 2,000불, 합계 약 15,200불)(보건사회부 사회국 해외이주과 1982; 해개공 1986 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서는 약 25만불 정도의 예산투자로 목축을 위주로 한 농장의 일부 개발도 시도한 적이 있으나, 계획은 계획의 단계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동 농

장의 토지소유권은 해개공 아르헨티나 지사의 이성근 지사장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1980년 지사가 현지법인으로 등록됨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지사명의로 등기되기도 하였다(한국해외개발공사 1980 참조).

결국 정부는 농업이민의 해외이주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고를 들여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입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정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브라질에 투자한 농장 구입의 사건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점을 상기할 때, 당시 정부의 책임자들이 농업부문의 해외이주를 얼마나 소홀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명목으로 투자한 국고로부터 나간 자금의 규모가 현금으로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 주는 기후조건이 한국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약점도 후일 지적되었고, 앳다마우카 농장의 토양은 염도가 심하여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토지의 구입이전에 반드시 실시되었어야 할 기초적인 사항이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1984년 현재 동 농장은 거의 버려진 상태로 국고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해외개발공사에 의해서 재투자가 건의되고 있고, 그 경비는 1985년부터 상환되는 정부주도 농업이주사업 융자상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아르헨티나에 나가 있는 한성기업(주)은 그 농장을 목장으로 활용할 경우 한국정부가 동 농장에서 생산한 소 또는 가공품을 수입해 주는 조건으로 동 기업의 자체자금개발을 제의해 온 상태이다.

(5) 이스까야꾸 농장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Santiago del Estero) 주의 히메네스(Jiménez) 구에 속한 이스까야꾸 농장은 총 5천 ha에 달하는 토지로서, 정부는 1차로 20세대를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1차의 계획면적은 500ha(개간지 200ha, 미개간지 300ha)였다. 이 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서북쪽으로 약 1,2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뚜꾸만 시와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 시의 중간지점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스까야꾸 사례의 추진경위는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현지교포의 의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1월 2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는 윤상해씨가 해외개발공사에 개략적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송출의뢰를 하여음으로써 해외개발공사가 직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기반을 기초로 하여, 현지교포인 윤상해, 이익환, 남운철씨와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 주정부의 경제장관인 “라휘” 대령이 협정당사자가 되

고, 주 아르헨티나 남철 대사와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 주지사인 “오초아” 장군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서울에서는 1978년 1월부터 이주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20세대는 1978년 4월 15일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동월 17일 목적지인 이스까야꾸에 당도하였으며, 동월 21일 “야꾸미스끼 농목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장에 윤상해, 부조합장에 조원술, 그리고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였다(한국해외 개발공사 1978:19-50). 그러나 최초의 입주자 20세대 중에서 대부분이 입주초기에 농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물론 그들은 아르헨티나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에서의 희망자 신청시에 농장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한 바 있다. 결국 이스까야꾸 농장에는 5세대가 남게 되었고, 5세대로 하여금 영농단위를 재편성 조직하도록 하고, 1981년 초에 5만불 정도의 영농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줌으로써 향후 2~3년 동안에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이 농장의 토지대금은 미화 123,500불이었으며, 이중 40%를 입주자 지분하고 잔액은 7년간 분할상환한다는 조건으로 토지가 구입되었다. 1982년 12월 현재 이 농장에는 1세대만이 남게 되었고, 단독 영농중인 1세대는 1981년 3월 해개공으로부터 영농자금 30,000불을 융자받아 1982년 8월까지 상환예정이었으나,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1983년 8월까지 연기해 주는 경우도 발생하였다(보건사회부 사회국 해외 이주과 1982).

우리가 앳다마우까의 사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 주의 기후적인 생활조건이 한국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협동조합식의 방식으로 농장을 구성하고, 한국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가 협의하에 조직적으로 시작한 이스까야꾸 농장의 실패 사례로부터 농업이민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점들부터 재고해 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물론 500ha의 면적에 20가구를 입식하였던 것이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지적도 타당하지만, 현지적응 훈련이라는 과정까지 거친 농업이민들이 입주 초기부터 거의 모두 농장을 이탈하여 대도시로 불법이주를 한 경우에 대해서 농업이민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한 후 선발을 한 사람들이 국고의 낭비와 외교적인 체면의 손상도 마다않고 농장을 쉽사리 포기하는 현상의 발생에 대해서는 농업이민을 빙자하여 정부의 지원을 보장받는 해외이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스까야꾸의 경우는 추진경위와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정부기관이 세밀하게 개입한 것이라는 점과 해외이주법이 발효된 1962년 이래 정부가 추진한 최초의 집단영농이민의 사례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해외영농이민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영농이민이라는 문제를 한국측의 입장과 현실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입식지로 선정된 대상지의 실정과 조건들에 대해서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절차가 아닌가 한다.

(6) 산 하비에르 농장

동 농장은 산타페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 북방 640km에 있다. 이곳은 1980~81년도 정부주도 남미농업이주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신규로 구입하여(미화 1,912,235.62불) 추진된 농장으로서, 총면적인 2,714ha(영농지 1,732ha, 침수지 982ha)이다. 영농조건은 여태껏 언급된 어떤 다른 농장들보다도 좋다는 판정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81년 12월에 11세대(64명)가 입주하여 1982년 12월 현재 10세대(41명)가 남아 있다(보건사회부 사회국 해외이주과 1982). 그후 입주자들 중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겹쳐서 1984년 8월 29일 현재 3세대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1981년과 1983년 사이에 걸쳐서 총 14세대(영농조 7세대, 목축조 7세대)를 입주시켜 공동영농을 시도해 왔으나, 농장원간의 불화 및 자진이농 등으로 인하여 목축조 7세대와 영농조 4세대가 이탈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벼농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4년의 작황을 보면, 벼식재면적 550ha 중에서 총 1,300톤(미화 186,000불)의 벼를 수확하였으며, 영농경비 86,000불을 제외한 순수입은 약 십만불 정도로서 세대당 순소득은 약 3만 3천불 정도되는 셈이다. 1985년도부터 융자금상환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 1986년에는 350ha의 벼파종을 완료한 바 있다. 1984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들은 한광호, 이창호, 신영택 등의 가족들이었으나, 그 중 한 세대가 이탈하여 1986년에는 2세대가 남았다.

산 하비에르 농장의 경우, 해외개발공사가 최초로 농업이민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내었을 때, 희망응모자들은 대부분이 해외거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전직 공무원으로서 해외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서독광부 또는 월남에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농업에는 무경험자들이었고, 일단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후 어떻게 하면 농장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소수는 농업에 전념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빚어지게 마련이었고, 농장을 이탈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농업이민이라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성찰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의 영농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 하비에르 농장에서 벼농사를 성공시킴으로써, 그리고 현지의 주민들을 영농과정에서 많이 고용함으로써, 산 하비에르 한

국인 농장은 현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우리는 농업이민이라는 것이 일종의 기업농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착안할 수 있다. 농업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받침이 되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기업농으로서의 해외영농이민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투자 및 자영업 이민

1985년 4월 29일 한국정부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이민에 관련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을 근거로 하여, 자영업을 할 수 있는 투자이민들이 정식으로 아르헨티나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물론, 이 협정의 이전에도 투자이민이 시행되었던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면, 1984년 봄에, 한국 SANA (주)에 의한 자전차제조 투자이민 25세대가 입국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해외산업개발연수교육과 기술훈련을 이수한 후, 해외개발공사의 생산시설 정부융자금 지원 2억원과 자체자금 2억원의 투자로 산타페 주에 공장설치를 착수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은 1985년 8월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배대한 1985:2). 이들은 자전거를 제조하기 위한 기자재를 한국에서 공수하였다. 그것이 2억원의 자체자금이며, 이 사업을 위해서 현지에서는 “아르헨틴싸나”상사(대표 조영의)가 설립되었다.

산타페 주에는 소고기분말 가공공장이 들어서면서 한국이민이 9세대 들어갔다. 운영자금의 압박으로 중지상태에 있고, 대표자인 전문호씨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금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란초스(Ranchos) 면세공업단지에 입주예정인 플라스틱 사출공장의 경우는 1986년 현재 아직 기계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서, 총규모는 12세대로서 기계가 도착되는대로 가동할 예정에 있다. 이미 선발대로 5세대가 입주한 상태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는 교포 한영천씨와 서울에 있는 한씨의 친구가 합작으로 세우는 염색공장 및 파이프 제조공장에 각각 5세대와 12세대가 입주예정이며, 장소는 산루이스 주에 있는 메르세데스 면세공업단지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 100km 밖에 있는 면세공단에 예정된 화장지 제조공장은 14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공장은 서울에 있는 조기완씨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조카인 조재명씨와 합작으로 설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장설립을 기초로 한 투자이민 이외에도, 자영업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내에 있는 광산회사에 자본투자형식의 자영업투자 방식의 이

주가 1차로 400세대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추가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프로젝트별이 아니고 개인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프로젝트별의 투자이민이건, 개인별의 자영업이민이건 위와 같은 방식들은 모두 1985년과 1986년 사이에 진행된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과거의 농업이민을 추진하던 방식과는 규모와 방법 그리고 그 효과면에서 대단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자이민과 자영업이주방식이 1984년 경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즉 법적인 보장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투자이민들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1985년 4월 29일의 이민협정체결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투자이민을 사후추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맺어진 것 같다. 그리고 1985년 9월 26일 아르헨티나 내무부령에 의해서 1985년 8월 8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입국자에 대한 사면령이 발표되면서,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등지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아르헨티나로 많이 몰린 현상도 발생하였다. 사면령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파라과이나 볼리비아 등과 같은 인접국으로부터 입국한 한국인과, 투자이민을 위한 협정이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양국에 의해서 체결됨으로써 합법적으로 이민을 들어오는 한국인들로 인하여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아르헨티나에는 한국이민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1985년도부터 아르헨티나로 입국허가된 이민수는, 1985년도에 723세대, 1986년도에 1,159세대, 그리고 1987년의 입국허가 예상수는 1,500세대 이상이다. 1986년도의 실적을 추진기관별로 분석해 보면, 최근의 이주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해외개발공사가 260세대, 범홍이주공사가 219세대, 남미이주공사가 90세대, 삼성이주공사가 40세대, 그리고 개인브로커들이 10 내지 5세대씩 한 것들이 모여서 총 1,159세대의 이주허가가 나온 것이다. 해외개발공사 이외의 개인 이민회사들이 더 많은 양을 송출하고 있다는 것은 아르헨티나로의 투자 및 자영업이주라는 것이 지극히 자유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해외이민에 관련된 상업적인 측면도 강하게 개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이주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로의 투자이민이라는 것은 이민을 희망하는 세대가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에 미화 3만불을 예치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거주지에 대한 제한도 없이 아르헨티나로의 이주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한국이민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제한을 받지 않으며, 2년후에 예치한 금액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수민국인 아르헨티나는 기본정책인 이민영입을 유지하면서 한편으

로는 이민을 허가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정부로부터도 거부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미로의 농업이민을 위한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시행되었던 대부분의 농업이민 사례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담해야 할 농업이민에 대한 정부측의 지원을 줄이면서, 그러한 부담을 개인이 스스로 감당하려는 분위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농업이민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한 바 있지만, 투자이민의 경우도 대부분이 개인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해외이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이민은 질적인 재고를 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농업이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이민의 경우도 정부의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정책적인 간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책적인 간여에는 투자이민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투자이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로서 특이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일종의 어업이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어업이주사업은 1977년 6월 아르헨티나 해무장관의 한국방문시 한국의 수산청장과의 어업협력 합의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서, 당초는 대립수산(주)이 추진하다가 1979년 4월 동사의 사장이 해외에서 사망함으로써 이 사업이 포기되었다. 그후 한성기업(주)이 1979년 11월 2일자로 어업이주사업의 진출업체로 수산청으로부터 선정되었다. 1984년 5월 16일자로 아르헨티나의 외무성에 제출된 최종적인 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이주민은 총 122세대, 어선은 2,000톤급 트롤어선 2척, 육상시설로는 냉동가공 공장 1동 및 주택 122동, 소요자금은 약 1,200만불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성기업은 1981년에 현지민간회사인 *Productos del Mar*사와 민간합작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선원 130명을 합작사에 송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주민의 정착지로서 *Chubut*주의 *Madryn*시가 확정되었다. 이주민 122명 중에는 선원 112명, 냉동가공공장 기술자 5명, 현지법인 관리요원 5명 및 그 가족 488명 등 총 122세대의 16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주민이 거주할 17평 규모의 주택 122동, 냉장능력 1,100톤 규모의 냉동가공공장 1동이 건설예정이다. 그리고 투입자금은 주택건설에 228만불, 선박구입에 400만불, 냉동공장 건설에 293만불, 운영자금 297만불 등 총 1,218만불이며, 이 중에서 재정융자금은 27%이다. 생산판매계획은 두 척의 선박이 민대구, 오징어, 새우, 민어 등 약 9천톤의 어획으로 연간 868만불을 수출할 계획이며, 어획물을 가공처리하는 냉동가공공장은 연간 3,870톤을 생산한다.

이 어업이주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지법인인 Hansung AR 주식회사가 1985년 7월 5일 설립되었고, 선박은 2,400톤급 대형 트롤선 Aracena, Arcos호이다. 1986년 5월 현재 한성기업에서는 이주민 선발을 위해서 사내 전담반과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주 적격자 31명을 선발하였고, 1985년 12월 7일 제 1 진 6명, 12월 11일 제 2 진 5명, 1986년 1월 15일 11명 등 총 22명이 출국하였다. 그리고 어업이주민들은 1985년 4월 19일 현지시간으로 새벽 0시 아르헨티나 어업이주 사업 1차선 아라세나 호는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항을 출발하여 이주사업의 첫막을 열었다. 한편 동년 3월 17일에는 이주민 정착지인 마드린 시에서 국민학교 기증식을 가지기도 했다 (사보 한성기업 1986 참조).

어업이주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양정부나 서로 다른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의를 본 소구점의 위치에서 탄생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입장을 보면, 1976년 국제적으로 200해리 해양법이 발표되고 영해에 관한 경제수역이 1977년에 미국과 소련 양국을 필두로 선포됨으로써 야 된 원양어장의 축소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당연한 어려움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원양어장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해결책의 추구가 시급한 입장이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으로부터의 어업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내의 경제개발정책과 외채의 형식이 아닌 외자의 도입에 의한 미 개발지역의 개발 즉 아르헨티나의 빠따고니아 개발법 추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77년 남위 40도 이남 지역인 빠따고니아의 개발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회사들에게는 특혜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익에 이바지하면 이주민들에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이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주희망자들에게 매력을 제공한 것이다. 한성기업에서 추진한 어업이민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성기업에서는 선원 선발에 있어서 지극히 조심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나간 다랑어 어선들이 아르헨티나에 기항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민 봉제업자들이 선원들을 유혹하여 불법입국시킨 적도 있고, 1984년도에는 한국회사인 동아종합과 일본회사 그리고 우루과이회사의 합 작으로 단순선원을 몬테비데오로 송출시킨 적이 있다. 그 때도 선원들이 어선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선원송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성기업의 경우는 선원개인의 송출이 아니라 이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단위의 어업이주를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성기업의 어업이주사업에 참가하는 조영복씨(1986년 현재 36세, 부산시 남구 용호동 364의 9)는 어선 및 상선의 승

선정력이 11년 되는 선원으로 부산수산대학 기관과를 졸업한 사람이며 아라세나 호의 기관장으로 일하게 된다. 조씨는 1985년 8월 어업이민 심사에 합격한 뒤 수산기술훈련소에서 3박 4일간의 새마을교육을 받았고 스페인어는 자습을 하고 있다. 조씨의 부인(손현희 30세)과 두딸(6세, 3세)은 조씨보다 6개월 뒤에 아르헨티나로 가도록 예정되어 있다. 조씨와 함께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이학송씨(29세, 2등 항해사)와 임점도씨(28세, 기관원)는 미혼이었으나, 어업이민 자격심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각각 1985년 10월과 11월에 전격적인 결혼을 하였다. 자격심사의 기준에는 미혼자는 제외되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지이탈의 가능성이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민계약이 끝나는 3년 후에 아르헨티나에 영주하기 위해서 부모(조철우, 이정순)를 그곳에 모셔갈 계획이다. 조씨는 4남 2녀 중의 맏아들이다(1986년 1월 1일 부산일보 참조).

Hansung AR의 사업진척상황을 1987년 1월 27일 현재로 보면 다음과 같다. 현지 법인은 49%가 한성기업의 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선적은 아르헨티나로 되어 있고, 아르헨티나 선적에는 자국민만 승선시킬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배에 승선할 선원들을 자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원과 그 선원의 가족을 이민케이스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2년 동안 마드린 시내로 한정된 거주제한이 부여되어 있다. 현재 한국인 선원 29세대가 마드린의 기지에 도착해 있으며, 이들에게는 곧바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신청후 2일이면 영주권이 발급된다. 그리고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한다.

현지법인이 어려워 하고 있는 문제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아르헨티나의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노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기업관리인들이 어떻게 노조가 강력한 아르헨티나의 풍토에 적응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생산된 어획고를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총인구가 3천만 정도이고, 그들의 주식이 육식이 지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획량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생선의 수출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령, 한국에서 우리의 이민들이 잡은 것이라고 해서 수입을 해주고 싶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Hansung AR은 51%의 주가 아르헨티나의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생산품이 한국에 반입되기 위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조건에 부딪친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수산업계가 아르헨티나에서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어업이민의 수출이라는 차원의 문제들과 함께 검토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표포사회의 형성과 변화

아르헨티나에 한국인이 거주해 온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는 구한국 시절에 멕시코의 유카탄반도로 계약노동이라는 조건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의 일부가 유랑하여 아르헨티나로 1930년 초반경에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는 추론을 전개하여 보았다. 그리고 1940년대에 일본이민의 대열에 들어간 경우도 확인하였고, 1950년대 후반에 한국전쟁의 여파로 발생한 “반공청년”들이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1965년 10월 14일에 제 1 차 농업이민이라는 자격으로 라마르게 농장에 입식된 13세대를 필두로 하여 농업이민이라는 범주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아르헨티나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들을 근거로 하여 친인척초청방문형태의 이민들이 연쇄반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2년의 “말비나스” 전쟁을 고비로 하여 농업이민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소위 투자 및 자영업이민이라는 형태가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며, 1985년에 체결된 한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이민에 관련된 협정이 계기가 되어서 투자이민과 자영업이민은 적지 않은 규모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종의 이민사를 일별해 볼 때, 필자는 늘어가는 한국인의 숫자를 기초로 하는 이민사회의 형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사회는 어떠한 변화를 하여 왔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적인 시각을 전개해 보려고 한다.

〈표 1〉은 1985년 12월 현재 남미에 있는 한국이민들의 현황을 연도별로 송출된 숫자를 국가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표 2〉는 1985년 11월 현재 남미에 살고 있는 한국이민들을 국가별로 총수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제시된 숫자라는 것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이고, 이 공식기록은 실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의 현상을 지적해 볼 수 있고, 그러한 현상들이 한국정부의 해외이주정책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주대상국들의 현지실정과는 어떠한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상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지극히 단순한 몇 가지의 현상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두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첫째, 필자는 1976년도와 1977년도 그리고 1978년도에 송출된 이민의 숫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976년도에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양국에 송출된 숫자가

〈표 1〉 남미의 국가별 연도별 이민 송출현황 (1985.12 현재, 외무부자료)

연도별	국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칠레
'62		170	—	—	—	—	—	—	—	—
'63		462	1	—	13	—	—	—	—	—
'64		604	2	—	302	—	—	—	—	—
'65		722	169	1,223	282	—	—	—	—	—
'66		340	6	273	104	7	1	—	—	—
'67		68	2	121	1	—	—	—	1	—
'68		306	42	47	8	—	—	—	—	—
'69		883	142	72	2	—	1	—	—	—
'70		1,775	797	52	8	—	10	—	—	36
'71		1,393	616	11	4	—	14	—	—	—
'72		2,635	153	94	77	5	—	8	—	—
'73		194	200	192	34	—	2	—	—	—
'74		186	124	714	73	48	8	6	—	—
'75		136	305	2,391	221	—	7	120	—	4
'76		107	1,214	6,727	276	5	14	18	—	—
'77		71	351	1,211	197	12	5	59	1	1
'78		41	105	15	38	1	3	28	—	2
'79		19	26	10	43	—	3	6	1	25
'80		18	32	20	94	—	3	52	—	6
'81		114	107	31	125	—	—	104	4	13
'82		226	124	278	162	—	—	36	—	22
'83		166	70	694	761	—	17	—	—	40
'84		121	754	1,290	1,384	—	16	284	1	80
'85		203	1,953	2,100	46	—	2	172	—	130
계		10,959	7,295	17,566	4,255	78	106	1,063	8	359

〈표 2〉 남미의 국가별 거주교민 수 (1985.11 현재, 외무부 자료)

이민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칠레
총교민수(명)	21,948	15,749	8,386	582	16	142	1,083	27	611
총세대수(세대)	4,894	3,147	2,412	159	6	44	290	9	168

공히 많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1977년도에는 그 숫자가 줄었고, 1978년도 이후에는 송출된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977년 한국 정부에 의해서 발표된 “5.4조치”라는 것의 여파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것은 수민국에서 한국이민을 받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한국에서 남미로의 이민을 송출하지 않은 결과이다. 둘째, 1984년 이후 다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로의 송출숫자가 급

격하게 늘은 것은 투자 및 자영업이민이라는 방식의 해외이주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1970년부터 숫자가 비교적 급증하는 이유는 기왕에 도착한 이민들에 의한 연고초청의 사례들도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표 1>과 <표 2>를 비교해서 고찰해 보면, 숫자상으로는 모순된 점이 발견된다. 즉 전자의 경우에, 아르헨티나로의 총송출수는 7,295명이고, 파라과이로의 총송출수는 17,566명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총교민수는 15,749명인데, 파라과이의 총교민수는 8,386명이다. 전자와 후자의 숫자가 논리적으로는 정비례의 경향을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반비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파라과이로 이주했던 한국인들이 월경하여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로 이주한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현지방문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현상을 초창기의 아르헨티나 이민사례인 라마르게 농장의 경우에서부터 발견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한가지 지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불법이민 또는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월경 등의 용어로서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외교적인 차원의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하고 논의하는 태도 익숙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가 현지의 실정을 외면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현지의 실정에 맞는 이해의 차원을 설정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불법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미 3국 즉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이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문제의 측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한국이민들의 입장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3국간에는 그리고 약간의 남미 여러 나라들 사이에는 출입국에 있어서 비자면제 및 한 쪽의 영주권이 다른 나라의 입국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전통적인 외교적 관행이 있다는 점을 미리 상기시키고 싶다. 따라서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입국하여 정착을 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절차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들어가는 상황의 어려움과 비교를 하는 것은 현지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3국 사이에는 시외버스를 타면, 십사리 건너다닐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법적하자없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처녀는 파라과이로 시집을 가고, 파라과이의 총각이 브라질로 장가를 가는 남미에 사는 한국인들의 혼인풍속도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의 세나라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위한” 사면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이동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불법”의 개념이 남미와 한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 사람들이 자기식으로만 “불

법”이라는 특정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남미에서의 그러한 불법이라는 것은 거의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온 일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한번씩 불법의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관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방식으로 불법을 규정하여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파라과이로부터 아르헨티나로 이동하는 또다른 이유로는 미국으로의 체이주를 위한 전단계의 시도로 해석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남미제국들보다는 비교적 쉬웠던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는 정치범들을 미국이 비교적 손쉽게 받아주는 선례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남미로 이주한 이민들의 종착 목적지가 미국인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미에 입국하기 쉬운 파라과이로 최초이주를 하였다가 제 2차로 다시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후 미국행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남미의 한국이민사회가 안정된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표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여파로 인하여 남미의 한국이민사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는 부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對 교포사회 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미국행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알게 된 교민들이 차선택으로 남미에 정착하는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교포사회의 정착된 모습도 나타나고, 그에 대한 한국정부의 對 교민사회에 대한 정책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현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기록한 각종의 문서(여행기, 신문기사, 출장보고서 등)들에서 나타나는 교민수를 종합해 보려고 한다. 이 자료는 공식적 통계숫자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한편으로는 시대별로 이민사회의 변동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도 하다. 즉 방문자들이 채집한 교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우리는 교민사회의 통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최소한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965년의 1차 농업이민이 도착한 이후, 아르헨티나로 가는 이민의 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1966년 12월 17일 부산항을 출발한 아르헨티나 행의 이민이 1967년에 목적지에 당도한 사례도 있고, 파라과이로부터 밀입국한 경우가 1965년 당시에 이미 적지 않았다. 그래서 1965년에는 100세대 정도의 한국이민이 이미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1967년 4월경에는 이미 982명의 교포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 828명은

파라과이로부터 월경한 이민이라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1969년 6월에 작성된 보사부의 남미이민조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로의 공식허가 이주자는 60세대에 244명이나 당시의 아르헨티나 거주 총이민수는 1,1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한양대학교 부설 해외개발문제연구소 1969:93-94 참조). 즉 1965년 이후부터 이미 아르헨티나에 들어간 한국이민들의 많은 수는 인근국가를 경유한 이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66년 영주권취득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약 1년간의 교섭결과 당시 100여세대가 영주권을 획득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영주권 취득자가 친척연고초청 방법을 이용하여 1970년에는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은 300세대로 늘어나기도 하였다(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8:78-79). 1973년경에는 총 교민세대수가 약 400정도이며, 그 중에서 약 160세대는 백구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이경희 1977:83).

백구촌이라는 것이 당시 아르헨티나 한국이민의 근거지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곳은 한국이민들에게 있어서 물심양면의 “리틀 서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67년 당시부터 존재했던 백구촌의 원지명은 “바리오 브레시덴페 리바다비오”이며, 이곳을 드나드는 시내버스의 번호가 109번이기 때문에 한국이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백구촌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근의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난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일종의 난민구호촌으로 시작한 이 지역은 한국이민들이 정착하기에는 안성마춤이었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 이민을 떠날 때, 한국정부가 허가하는 환전액수가 적고, 미화를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민초기의 생활이라는 것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1971년 아르헨티나로 이민한 조일영씨의 경우, 당시의 환전액수가 어른 500불, 아이 250불이었기 때문에, 한가족 전체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미화가 1,800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암시장에서 구한 1,000불을 반창고 안에 넣고, 다시 그것을 우산대 속에 숨겨서 이민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민초창기의 생활이라는 것은 백구촌 같은 곳이 적합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한편 파라과이 등지로부터 월경해서 아르헨티나로 들어갔던 한국이민들은 난민구호촌의 원주민 또는 타민족들로부터 싼 값에 주택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곳의 하나가 바로 백구촌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지역은 페론 정권 시절에 노동조합의 노력에 의하여 생긴 곳으로서 원래 50% 이상의 주민이 볼리비아와 칠레에서 온 원주민들의 정착지였다. 그리고 백구촌의 뒷편에는 더 하층의 빈민들이 사는 “비자 미세리아”라고 불리는 빈민촌이 있으며, 이곳이 백구촌의 한국인이 경영하는 “굴뚝없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빈민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초기에 한국이민들이 임시로 정착하였던 곳들은 “긴급피난민 구호촌, 쓰레기 소각장 근처, 낮은 지대의 후생주택, 래미로 지역(부두를 말함) 등 네곳의 빈민촌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곳들은 대체로 버스종점 근처였다”(김용원 1968:178). 그러한 장소들 중에서 백구촌이 한국이민들에게는 가장 선호되는 곳이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사회의 구심점이 이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민들이 백구촌을 선호한 것은 그들의 생산방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부터 한국이민들이 주력했던 업종이 소규모의 봉제업과 의류제조 및 의류판매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노동을 기초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택하였다. 그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서, 한국이민들은 싼 값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웃나라들에서 밀려들어온 난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원래의 난민구호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조강환 1977:149). 즉 초창기에 백구촌을 “리틀 서울”로 건설한 한국이민들은 싼 값에 안정된 주택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의류 및 봉제관련업을 하기 위한 싼 값의 노동력을 손쉽게 확보하려는 목적을 부합시킨 것이다.

1974년과 1975년 사이에 인접국에서 밀입국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파라과이 등지에서 밀입한 한국이민들도 그 혜택을 보았다. 그리고 1976년의 한국이민 숫자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서로 다른 자료가 있다. 한 자료는 약 700세대, 3,500여명으로서 파악하고 있고, 그 중에는 편물업이 335세대, 봉제업이 200세대, 상업 및 서비스업이 124세대, 농업이 21세대, 기타가 20세대 등이다(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8:80). 다른 자료는 총세대수를 580세대로 잡고,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를 3%, 편물하청업을 하는 세대를 48%, 의류제조를 하는 세대를 18%, 상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세대를 29%, 기타를 2%로 나누고 있다(남미농업이민조사단 1976:27). 1977년의 자료는 총교포세대수를 800세대로 잡고, 인구수는 약 4천명으로 추산한다. 그리고 그중에서 360세대가 편물업에 종사하면서 이들의 대부분은 백구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의류제조에 200세대, 상업서비스에 155세대, 농업에 20세대, 기타에 70세대이다(조강환 1977:149).

서로 상이한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이상의 자료들을 비교하여 볼 때,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은 지적이 가능하다. 즉 한국이민들의 의류제조와 판매업이 소규모의 행상에만 의존하던 시대를 벗어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심가인 “온세”지역에 의류판매전문점 시대를 연 것이 1970년대 중반 이후라는 면접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말비나스 전쟁 전)에 가장 많이 한국인들의 옷가

게가 온세지역에 있었던 경우는 150여 개였다고 한다. 이 시기의 교민수는 1979년에 약 5천명 정도였다고 하며, 이들 중에서 최소한도 3천명 정도는 파라과이로부터 제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진술은 전혀 무시될 수 없는 것 같다. 백구촌을 근거로 하여 시작된 한국교민사회의 의류관련업이 하나의 상가를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게 된 시발점에 대해서 언급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경제적 안정을 기초로 하여 1982년 9월에는 교민회의 재결성이 가능했던 것 같다.

1984년 경부터 시작된 투자 및 자영업이민의 출현은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사회를 상당한 정도로 변화를 시키는 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1984년부터 1986년까지 합법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이민으로 들어간 한국인의 수는 약 2만명 정도나 된다는 추산이 있고, 이 숫자는 기존의 이민수의 4배정도나 되고 있다. 즉 이민사회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투자이민과 자영업이민들은 비교적 넉넉한 자본금을 갖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민들이 유지해 온 경제적인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있다는 것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이민 급증이 불러온 변화로서는 백구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질서에 영향을 미친 것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던 한국이민사회의 주거범위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전국의 소도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백구촌내에서는 새로운 이민들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불안감의 반영으로 일시적으로는 약 60개소의 점술집이 생겨나기도 하였고, 교회의 갑작스러운 팽창과 각종의 동문회 및 향우회 등도 자생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종류로서 특이한 것으로는 서독광부출신들로 구성된 Rhein회(회장 송해섭)라는 것이 있고, 회원은 20명이다. 그리고 한국이민수의 증가에 비해서 백구촌의 협소한 점과 교민간의 상권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피하기 위해서 1984년부터는 의류소매상을 하기 위해서 지방도시로 이주하는 경향도 상당수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일부의 교민들은 칠레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지방도시로의 이주현상은 그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집중되어 있던 한국이민들이 아르헨티나의 전국으로 확산된 주거분포현상을 보이는 것으로서, 새로운 적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멘도사(Mendoza)의 경우에는 장윤희씨 이외에 6세대 즉 총 7세대의 한국이민이 의류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장씨가 최초로 들어온 경우인데, 그는 1983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고, 7세대 중에서 1세대는 칠레에서 온 가족이다.

빠라나에 3호, 산후안에 4호, 산루이스에 2호, 리오파루다에 4호, 후후이에 2호, 바틸로체에 2호 등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이동상황은 재아한국교민회와 한인이주 20주년기념사업회가 공동명의로 발행한 “86한인록”(1985년 10월 31일 발행)의 명부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한인록에 나타난 한국이민의 세대수를 지역별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Bahía Blanca에 2세대, Cordoba에 19세대, Corrientes에 3세대, Chubut에 4세대, Entre Río, San Luis에 5세대, Jujuy에 2세대, La Rioja에 2세대, Mendoza에 6세대, Mar del Plata에 3세대, Misiones, Formosa에 3세대, Neuquen, Catamarca에 4세대, Río Negro, La Pampa에 10세대, San Juan에 4세대, Santa Fe에 25세대, Salta에 4세대, Santiago del Estero에 4세대, Tucuman에 6세대, Ushuaia에 5세대, 그리고 수도인 Buenos Aires에는 2,205세대, 총합계 2,316세대의 한국이민가구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다.

초기의 아르헨티나 한국이민사회는 아르헨티나로 온 사람과 파라과이를 목적지로 하여 파라과이로 가던 도중에 아르헨티나에 도중하선한 사람들과 그리고 파라과이로 갔다가 아르헨티나에 월경해서 온 사람들이 합하여서 구성되었던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그후 연초초청이민의 증가와 파라과이로부터의 월경자의 증가가 계속되어 오다가, 1984년 이후에 시작된 투자 및 자영업이민의 증가로 인하여, 1986년 말 현재로는 약 4만명의 한국이민이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7. 맺 음 말

1985년 10월 31일(목요일)에는 아르헨티나 한국이민 20주년의 기념행사가 교민회(회장 정국일) 주최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Río Bamba y Viamonte에 위치한 학교의 강당을 빌어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1965년의 제 1차 농업이민이 도착한 때를 이주원년으로 잡아서 행사를 거행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필자는 반대의 의사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본논문에서 前史로 다룬 부분들이 완전히 망각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967년 1월에 결성되었던 한국교민회의 초대 회장에는 반공청년 출신으로서 1957년에 입국하였던 김관옥씨가 피선되었다는 것도 이민사의 출발을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의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필자는 전자에 언급한 교민회 발행의 “한인록”에 수록된 “한인이주약사”를 중심으로 이민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업이민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정부가 시도했던 이민의 사례들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

고, 그 여파에 대해서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투자 및 자영업이민의 등장으로 한 한국이민사회의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의 이주약사에 관해서 요약하기로 한다. 우리는 1930년대 초에 이주했을 한국이민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심도있게 제안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일제시대에 이주했던 사람들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아르헨티나에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1963년 12월 15일에 한국정부는 아르헨티나와 외교관계를 맺고 공관을 설치하였다. 1965년 10월 14일에는 노득린씨 등 13세대 78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Darcena "A"항구에 도착하였다. 1965년 12월 17일 박민홍씨 등 5세대가 라마르게 농장에 도착하였다. 1966년 2월경에는 Reairo역 뒤의 판자촌에 한국이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 8월 13일 온준기 씨등 8세대가 라마르게 농장에 입주하였다. 1966년 9월 경에는 파라과이 등지에서 대거 이주해 오으로써 150번 버스 종점인 현재의 "빠르게 데 라 시우닷" 근처와 109번 버스 종점인 꼬보일대에도 집단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두 지역이 교포들의 생활중심지가 되었다. 1966년 12월 교향청소숙의 "리노" 신부가 영주권없는 교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노력한 결과 300여명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1967년 1월에 교민회가 1차로 발족되었고, 초대회장은 김관옥씨가 선출되었다. 1967년 11월에 해외개발공사가 지사를 설치하였다. 1969년 12월 교민들의 집단거주지인 150번 버스 종점인 "빠르게 데 라 시우닷" 등이 철거되면서 시영주택인 루가노 아파트와 비에가스 지역 등으로 교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었다. 1973년 12월 16일 교민회의 추진으로 교민회관 건립위원회(위원장 백명규)가 발족하였다.

1974년 4월 6일 Balbastro 615에 교민회관을 구입하고 입관식을 거행하였다. 1976년 몇몇 교민들이 처음으로 Once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이 지역은 후일 한국이민의 상권중심지가 되었다. 1979년 2월 아르헨티나 정부에 의해서 백주촌 지역의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교포생활권이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1983년 온세지역 한인 상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온세상인회가 발족되었다. 1984년 10월 15일 재아한국학교 건립추진위원회(회장 최재학)가 발족하였다. 1985년 1월 온세상공인회를 모체로 한 한인상공인회가 발족하였다.

둘째, 한국정부는 막대한 자금과 조직을 지원하여 아르헨티나에 농업이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몇 개의 농장을 구입하고 이주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미화로 1천만불에 가까운 금액이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개발공사의 지시를 설립하고 책임자와 가족들이 현지
에 정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민은 “실패였다”라는 결론밖에 내
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르헨티나에로의
농업이민이 실시된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정부는 정부 자신의 제획과 연구를 기초
로 하지 않고 이미 다른 개인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사후수습하는 식으로 농업이
민의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액의 자금이 들고 국민이 해
외에 정착해야 하고 외교적인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당
국은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로 임했던 것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왜냐하면, 아
르헨티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의 투자를 시도했다는 인
상을 씻기 어렵다. 이민협정 또는 그와 유사한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에
관련된 작업을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선행하였던 것도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연구는 사후에 문제가 생긴 뒤에 “조사단”의 구성과 파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사전에 전문가들에 의한 치밀한 연구는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라는 것도, 농업이민이라는 용어에 묶여서 농
업에 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그것도 몇개월 정도로) 수준에서 그친 것
이지, 아르헨티나의 법률과 제도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전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농업이민의 추진세력들은
새마을운동의 개념을 아르헨티나의 농장에 도입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새마을 노래
를 불러가면서 농토의 개간에 임하였으니,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탈진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어떤
때는 한국에서 농업이민 희망자를 엄선하여 예비훈련까지 시켜서 송출시킨 이민들
이 입식직후에 농장을 탈퇴하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기업
농의 사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타진하는 사례를 보았고, 투자이민의 진출
에 의한 어업이민의 정착이 성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검토해 보면,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의 1차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企業型이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
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업종의 대상이 농업이든 어업이든 간에 아르헨티
나의 산업구조가 1차산업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1차산업에 기업적인
기초와 지원이 없으면, 한국이민이 성공적으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한가지의 경험
을 하는 듯가로 한국정부는 많은 외화를 지불한 것이다.

셋째, 아르헨티나는 현재 한국이민을 받아들이는 극소수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이민법 22.439조에 의거해서 수민을 계속하고 있고, 투자이주
의 경우에는 법 464조에 의해서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서 이주자 지참자본금 및 사

업수행상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류의 면세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수민을 허용하고 있는 범위는 연고자 초청, 투자이주, 취업이주, 자영업투자 등의 형태들이다. 정부는 해외이민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국민의 해외이주라는 단절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외이민은 해외투자라는 틀속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연속적인 차원 즉 해외이민은 해외투자로 연결된다는 사고인식 속에서 해외이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르헨티나는 자국내의 미개발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전진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그러한 작업의 선행조건으로서 반드시 사전에 심층적인 학제적 현지연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후기>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자료는 1986년 8월부터 1987년 2월까지 남미에서 행한 필자의 현지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다. 당시의 현지답사를 위해서 연구비를 지원해 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장기출장을 허락해 준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현지에서 필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성함을 열거하고자 한다. 고부안 공보관(당시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 근무) 부부, 김정 선배(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는 교민으로서 필자의 대학 선배) 부부, 최재학 선생(재아한국학교 설립준비위원장으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민)과 그분들의 가족, 이성근 선생(전 해외개발공사 지사장), 《노소프로스 NOSOTROS》(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행되는 한글신문)의 관계자들, 재아 한국교민회(회장 김선철)의 관계자 여러분, 멘도사의 장윤희씨 부부, 후후이의 최천명씨, 바릴로체의 양대철 사범, 그리고 필자의 우문에 현답을 성실하게 하여 주신 아르헨티나의 교민여러분들이다.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해외개발공사의 자료실 관계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박현숙 석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자료를 정리하여 하나의 논문을 만들도록 격려하여 주신 김현창 교수에게도 인사드린다.

참 고 문 헌

- 국제경제연구원 1977 한국의 대중남미 이민현황과 전망.
 김용원 1968 이민간 사람들 : 남미이민의 실태. 월간세대 1968년 7월호.
 남미농업이민조사단 1976 남미농업의 현황과 전망. (유인물)
 배대한 1985 아르헨티나 농업이민의 추진동향. (유인물)

- 보건사회부 사회국 해외이주과 1982년 12월 남미 3개국 출장보고서.
- 부산일보 1986년 1월 1일자.
- 외무부 1985 재외국민현황.
- 이경희 1977 남미의 기억들. 서울:열화당.
- 재아한국교민회/한인이주 20주년기념사업회 1985 재아르헨티나 '86 한인록.
- 전경수 1986 남미의 한국이민(자료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조강환 1977 르포 이민창구. 신동아 1977년 5월호.
- 주간우리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행되는 교포한글 신문, 1987년부터 《NOSO-TROS》로 개명되었음.
- 한국해외개발공사 1978 아르헨티나 농업이주편람. (유인물)
1980 12월 출장보고서(유인물).
1986 업무현황(유인물).
- 한성기업주식회사 1986 사보 한성기업 1986년 5월호.
- 한양대학교 부설 해외개발문제연구소 1969 한국인력의 해외진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문교부학술연구조성비)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8 남미이민의 현실적 과제. 서울:해외교포문제연구소.

Korean immigrants in Argentina: an ethnographic sketch

Chun, Kyung-Soo

This report is dealing with an issue of the Korean immigrants in Argentina in general. The author mainly focuses on the history of the Korean's settling down and projects a part of the research on the Korean immigrants in Latin America.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o justify a small number of the first migrating Koreans through Yucatan peninsula arriving in the northern part of Argentina around the time of the Chaco war(1932~1935) between Bolivia and Paraguay. For this matter, we have to wait for a time being until the serious field research. Next, we could find a couple of individuals moved into the country as Japanese immigrants during the colonial days. The first Korean immigrants holding the Korean passport is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arrived in Buenos Aires on the 14th of October, 1965. The size of the group was 13 households including 78 persons. Another five families entered into a farmstead called "La Marque" on the 17th of December at the same year. They left the farm right away and the farm was filled with 8 Korean households from Paraguay in the next year. Korean towns have started near at the Parque de la Ciudad which was the bus depot and at the Cobo area which was another bus depot. The latter one is known to the Koreans as "Paekku-ch'on"(109 village) because the number of the bus connected to the depot was 109.

Korean government has got interested in sending immigrants in Argentina and set up an oversea branch of the government funding corporation to initiate the immigration project as well as to support the immigrants in 1967. The Paekku-ch'on seemed to be a kind of the "little Seoul" until 1979 when the government of Argentina was starting to clear out some parts of the area. Since that time, the Korean immigrants have experienced to scattered around the city of Buenos Aires and this tendency has been literally growing since the year of 1984 when both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Argentina

agreed upon a sort of immigration act. These days one can meet Korean immigrants almost all over the small cities in Argentina. Most of the Korean immigrants are working on the line of clothing and related businesses.